

#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서도원 의원 대표발의)

|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<br>번호 | 2226 |
|----------|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3. 1. 27.

발의의원 : 서도원 의원,  
신달호 의원, 이연숙 의원

## 1. 제안이유

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달성군민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,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, 달성군 실정에 맞는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개선 사항을 추가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의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개선 사항을 추가함.(안 제6조 1항부터 4항까지)

## 3. 개정 조례안 : 붙임

##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자전거주차장 설치)”를 “(자전거주차장 및 보관소 설치)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법 제11조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”을 “법 제11조에 따라 자전거주차장 및 보관소를”로 하고, “장소에 자전거주차장을”을 “장소에 자전거주차장 및 보관소를”로 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”을 “자전거주차장 및 보관소의 설치를”로 한다.

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 군수는 자전거주차장 및 보관소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그를 직접 설치할 수 있으며,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 및 보관소를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.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조(목적) ~ 제5조2(자전거 이용자 보험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6조(자전거주차장설치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6조(자전거주차장 및 보관소 설치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<u>자전거주차장</u> 을 설치하는 경우 이외에 공원, 하천, 공공기관, 시내버스정류장 등 자전거 이용이 많은 장소에 <u>자전거주차장</u> 을 설치할 수 있다.(개정 2018. 7. 20.) |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<u>자전거주차장 및 보관소</u> 를 설치하는 경우 이외에 공원, 하천, 공공기관, 시내버스정류장 등 자전거 이용이 많은 장소에 <u>자전거주차장 및 보관소</u> 를 설치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② 삭제 (2018. 7. 20.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삭제 (2018. 7. 20.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③ 군수는 공동주택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<u>자전거주차장</u> 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③ 군수는 공동주택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<u>자전거주차장 및 보관소</u> 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④ 군수는 <u>자전거주차장</u> 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| ④ 군수는 <u>자전거주차장 및 보관소</u> 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<u>그를 직접 설치할 수 있으며</u> ,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 및 보관소를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. |
| 제7조(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및 운영)<br>~ 제17조(시행규칙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